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연구

백 옥 인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사회학)

이 연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의 문제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별로 구분하여 분류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네티즌의 자율적인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왜 협약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 논문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지는 사회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현실세계에 대한 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갖는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 개입 이전에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법률적인 규제와 기술적 규제의 결합물인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협약을 거치지 않은 기술적인 규제가 왜 위협적인가를 밝힐 것이다.

핵심용어 : 사이버스페이스, 규제, 자율, 코드, 협약

I . 문제제기

냉전시대의 군사용 목적에서 출발한 인터넷은 자율과 참여에 바탕을 둔 열린 체제로 발전해 왔다(홍성욱, 2002). 1990년대 초중반의 인터넷은 정부의 규제와 무관한 자유의 왕국이었다. 인터넷이 채택하고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전지구적 연결이라는 특징 때문에 국가권력의 개입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인터넷 아키텍처architecture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과 더불어 네티즌들의 문화적인 의식과 인터넷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정부의 규제를 어렵게 만들었다.¹⁾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사용자의 수가 폭증하고 인터넷의 상업화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인터넷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현대의 새로운 미디어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를 포함한 갖가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갖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개별 국가 단위에서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려는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초기 인터넷의 자유로운 공간은 규제의 대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CDA)』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시도되었지만 네티즌의 반발과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한 개입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1년 9월 뉴욕테러 이후 각종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규제와 통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는 이제 더 이상 현실세계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은 열린 체제에서 닫힌 체제로 다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률적 규제가 그다지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미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왜 쉽지 않은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현실 세계에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갖는 사회문화적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매우 지체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을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가 왜 협약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규제 관련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1) 초기 네티즌들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Hauben(1997) 참조. 초기의 네티즌들은 발로우(Barlow)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에서 보듯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바탕을 둔 '제퍼슨시안 자유주의(Jeffersonian Liberalism)'를 지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백옥인(1995) 참조.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단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지는 원인을 살펴보고,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법률적 개입 이전에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자유주의와 규제주의간의 대립지점을 알아볼 것이다. 인터넷 아키텍처와 네티즌의 관습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기구의 규제로부터 사이버스페이스를 지켜낸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검토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규제주의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제Ⅲ절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제Ⅳ절에서는 규제의 주체와 대상영역을 유형화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Ⅴ절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의 위상과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이 논문의 함의와 한계를 정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규제가 갖는 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K C I

Ⅱ. 자유주의와 규제주의의 대립과 모순

1990년대 중반까지 인터넷에 대한 국가기구의 역할은 네트워크 관련 기술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발에 대한 지원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쳤다. 형성기의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듯했다. 초기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조건은 넷 사용자들의 규범과 인터넷의 기술적 아키텍처 자체가 국가기구의 법률적인 규제에 대항하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6년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CDA)』 제정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자와 규제주의자간에 대립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결과는 자유주의의 판정승이었고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기구의 규제와 개입은 일단 멈추는 듯이 보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가 물질로 구성된 현실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정신과 마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Barlow, 1996). 제퍼슨의 자유주의 철학과 가치관을 신봉하는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유방임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념의 밑바탕에는 인터넷이 채택하고 있던 기술적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사이버스페이스의 자유와 개방성의 자연스런 질서를 유지해 줄 것이라 믿었다.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기대는 인터넷이 채용하고 있던 기술적 구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인터넷이 채택한 상호호환적이며 탈중심적인 구조는 위계화된 조직을 수평화하고 닫힌 체제를 열린 체제로 전환하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근거로 찬양되었다(Kapor, 1993).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국민국가의 주권을 상당정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²⁾

초기의 기술유토피아주의자들은 인터넷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로 흔히 ‘권능강화 empowerment’와 ‘수평화decentralization’, 그리고 ‘민주주의와 조화democracy and harmony’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Negroponce, 1995). 인터넷의 양방향성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기술적 구조와 수평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³⁾ 인터넷의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켰다. 초기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분권적인 구조architecture와 열린 체제open system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규제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신품위법』을 비롯한 법률적 규제가 실패한 이유는 인터넷의 이러한 기술적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넷 사용자들의 가치관과 규범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기 네티즌들은 제퍼슨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사이버스페이

2) ‘전지구화(globalization)’는 1970년대 중후반의 세계경제 위기 이후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한 탈규제,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대 클린턴 정권과 IMF는 강력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통신기술이 강력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국가의 주권과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되었다(백옥인, 2002 참조).

3) 초기 네티즌 사이에서는 기술유토피아주의의 낙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와이어드(Wired)』지를 통해 전파된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와 네그로폰테(1995)의 디지털 신화가 이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 자유주의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과 『통신품위법』의 위헌판정이 이루어지던 1990년대 중반까지 넷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스 독립의 근거로 삼았다. 네트즌 사이에 조성된 여론과 규제에 항의하는 집합행동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저지한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들어와서 제퍼스니안 자유주의의 사이버스페이스 완전독립론은 정부의 개입 및 인터넷의 본격적인 상업화에 직면하여 그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중반의 정부개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업화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재구조화에는 그다지 확실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 자체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자유주의자들의 기술환원론과 기술결정론은 사이버스페이스 절대독립론으로 연결되었지만 현실은 사이버스페이스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현실사회의 한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장했던 기술은 언제든지 변화되고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성격에서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위상을 도출하는 기술환원론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는 사회협약주의적인 기술관이 요구되는 것이다.

레식(Lessig, 1999)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를 검토하면서 인터넷 아키텍처를 포함한 기술적 통제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그는 인터넷의 열린 체제가 국가와 자본의 개입을 통해 닫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을 보장했던 인터넷의 구조가 반대로 소프트웨어 기술(코드code)과 그의 결과적 축조물인 구조(아키텍처architecture)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레식은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스페이스는 초기 네트 사용자들의 가치와 규범이 완전히 부정되는 완벽한 규제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표 1〉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와 입장

	규제주의	자유주의	협약주의(형성주의)
규제에 대한 입장	규제 찬성	규제 반대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협약을 통해 잘 다듬어져야 한다.
현실/사이버스페이스간의 관계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새로운 규약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는 공간
대표적 주장자		초기 네트즌, Barlow	Lessig
특징	정부주도의 규제 통신관련품위법 등급제	Jeffersonian Liberalism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사이버스페이스는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함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느냐가 중요함

〈표 1〉은 자유주의와 규제주의, 협약주의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진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규제주의자는 사이버스페이스를 현실세

계의 확장으로 본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자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공간으로 본다. 자유주의와 규제주의간의 입장 차이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비롯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천부인권처럼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은 네트 사용자들 자신에게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규제주의자들은 현실세계의 주권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관철되며 현실세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현실세계의 권력이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주의자들의 입장과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사이버스페이스 완전독립론이나 사이버스페이스 현실종속론은 둘 다 무리한 주장이다. 현실세계와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두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가 현실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터넷 아키텍처의 수평적인 구조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는 자유주의자와는 달리 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규제될 수 있고,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주의자와 규제주의자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양자 모두 사이버스페이스를 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구조가 각각 독립과 통제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기술 자체가 갖는 속성에 입각하여 자율과 통제의 근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설득력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기술환원주의적인 설명에서는 같은 기술이 통제의 근거도 되고 자율의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페이스 자유주의자와 규제주의자 모두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제3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협약주의는 기술과 사회적 실천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경우 당연히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치와 규범을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실천이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떠오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제3의 입장을 ‘협약주의(형성주의)’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레식은 정치적 개입과 집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만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가치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Lessig, 1999, pp.87-94).⁴⁾ 만약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내부 사용자들의 공동체적인 합의와 약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협약에 의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약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은 사용자들의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지 자유주의자들의 ‘독립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가기구의 법률을 통한 개입과 통제도 그것이 사용자들과의 협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이라는 영역에서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예상하게 된다.

Ⅲ. 네티즌의 규범Norm과 국가의 법적규제Regulation

4) 한편 포스트(Post, 2000)는 자유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집합행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레식의 협약주의를 반대한다. 그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불개입을 우선시한다. 역설적이게도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한다면 코드를 통한 규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신과학자인 바라바시(Barabasi, 2002, pp.286-289)는 코드와 아키텍처를 면밀하게 구분하면서 네트의 부분에 속하는 코드의 차원에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전체구조인 아키텍처는 그 자체의 자율적인 생명력이 있어 규제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바라바시의 주장도 자유주의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 이를 만들었고 현재 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주권과 이를 주어진 대상으로 통제하려는 법적규제간에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CMC))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접속하지 않는 한 사이버스페이스는 없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기본적인 시민권은 접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은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은 현실권력의 형성과정과 다른 경로를 밟을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주권이 현실세계의 주권과 대립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현실세계의 권력관계가 사이버스페이스에도 반영되겠지만 양자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이버스페이스와 현실세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와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적규제의 영역에서 볼 때 사이버스페이스만의 주권은 성립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규제주의자들은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도구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미디어와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 주권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네티즌의 참여와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권은 참여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합의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아울러 물질적인 형태를 동반하지 않는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해 생각과 의사소통의 전면적인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 네티즌의 주권과 국가규제간의 갈등은 이미 만들어진 사이버스페이스 안의 규범과 바깥으로부터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강제하는 법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의 법적규제는 그 내용과 형성과정 및 성격이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처와 관습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근거를 마련해 준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 목적에서 시작하였지만 인터넷 아키텍처의 개방성과 상호호환성, 지구촌화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단위국가의 법률적인 개입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처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인터넷 아키텍처나 도메인 등에 관하여 인터넷 주권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을 보면 개별단위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선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규제방식으로 인터넷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아키텍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영역의 조절도 법적표준이 아니라 실제표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키텍처의 특성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의가 조절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간의 의사소통방식에서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행위는 국가의 규제 이전에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네트워크 사용자들의 새로운 가치와 사용규범이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과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익명성⁵⁾이나 탈육체성, 상

5) 인터넷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탈육체성이란 특성은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탈육체성이 보장하는 '익명성'은 표현의 폭과 넓이를 확대하지만 정치적인 통치영역에서는 사상통제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네트워크에서 상업화와 시장의 법칙을 관철시키기가 몹시 힘들다는 문제점에 봉착한다. 정부기구와 자본이 익명성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대항세력의 형성에 따라 힘 관계가 변화하거나 자본주의적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개인적

호연결성, 동시성과 비동시성, 저장성archive, 디지털 복제 등 인터넷 아키텍처로부터 출현하는 특징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만든 기본요인들이다. 디지털 복제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공유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물질적인 근거이다. 이것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디지털 지적재산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유와 나눔의 집합적 소비관념이 지배하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무료경제나 ‘선물경제 gift economy’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을 상품경제의 틀로 급작스레 변환하기도 쉽지 않다(Barbrook, 2000).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새로운 소비계층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도구가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글로벌한 자료와 정보의 흐름을 일국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실효가 없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행을 무력화시키려면 사이버스페이스를 시장논리가 관철되는 공간으로 흡수해야 하고 자율적 사용자인 네티즌을 소비자의 틀로 포섭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상업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경우 디지털경제의 향방은 지적재산권의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자들에게 강제하여 네티 사용자들의 소비규범을 조절하는 데 달려 있다(백옥인, 2002). 이러한 자본의 규율과 규범을 법적인 강제들을 통해 네티즌에게 강요할 경우 네티의 규범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여건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형성과정과 구조가 현실세계와 다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공동체는 현실세계의 가치와 규범과 다른 위상을 지니게 된다. 정부는 통제의 구실을 정당화하고 그 수단적 절차를 명문화한 법률을 통해서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에 개입한다. 정부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규범과 관습을 법률조항의 틀로 제한하거나 통제하려 시도한다. 그런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관습과 현실세계의 법률은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곧 관습과 법의 대립이자 긴장이 이루어지고 그 대립점에 현실세계의 국가와 사이버스페이스의 시민사회가 맞서게 되는 것이다.

IV. 규제주체와 대상영역

이상에서 국가의 법적규제가 네티즌의 규범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와 자본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을 길들여 현실세계의 법적규제로 대체하려 시도한다. 이에 대해 네티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주권과 규범의 수호를 내걸며 대항한다. 자유주의와 규제주의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티즌의 규범과 국가의 법적규제간에 협약과 합의과정의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갖는 위상을 이해하는 데 한걸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네티즌의 규범이나 국가의 법률이 일방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의 일방주의보다 각각의 영역별로 양자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유연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이루어진다. 규범과 법률이 각각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도식화하기 위해 사이버스페이스를 사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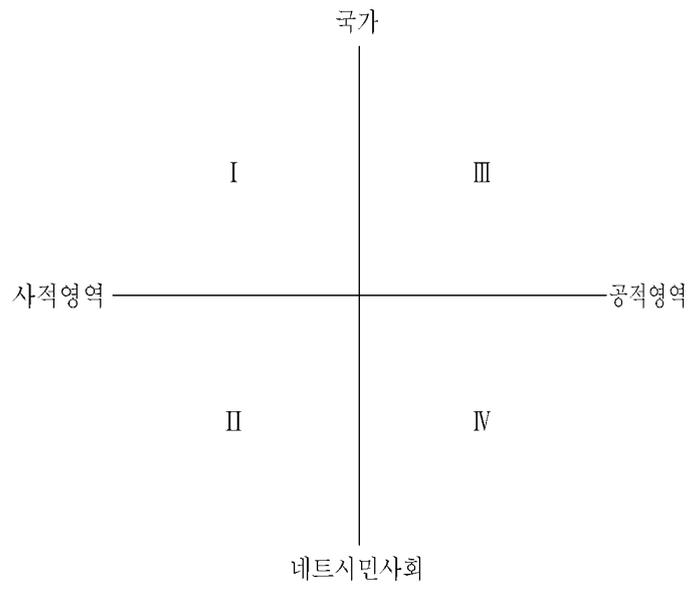
결제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실명의 강요-익명성의 상실-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확장되었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이어지거나 공공성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자유와 공개성을 기반으로 하던 초기 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한 후 네티즌의 자율적인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분할해 보았다.

다음의 <그림 1>은 국가기관의 법적규제와 네티 시민사회의 규범을 기준으로 하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구분 축으로 설정하여 작성한 모형이다. 국가규제가 우세한 사적영역I은 이메일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의 유출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적정보의 보호영역이기도 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거나 사적정보가 공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일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이 영역에서의 규제는 쉽게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기관의 규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도 크게 대립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거나 사적정보를 정권의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막거나 감시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는 데이터베이스 감시(Lyon and Zureik, 1996)로 이루어지는 I 영역에서의 통제와 감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II영역은 사적영역에 대한 시민사회나 자율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일대일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지글이나 대화방 등은 이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메일을 통한 비동시적 의사소통도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 서로간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적공간이다. 이메일이나 대화방에서 오고가는 이야기에 대한 개입과 규제는 사적영역에 대한 감시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이유는 그곳이 일대일의 대화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전화도청이나 감시가 불법인 것처럼 II영역에 대한 감시는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문제를 낳는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감시와 통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적영역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부실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의 유출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황폐화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I, II영역은 국가기관의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조심스런 개입과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 이런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규제주체와 대상영역



KCS I

III영역은 공적분야에 대한 국가의 규제영역이다. 현재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의 경우가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규제에 관한 논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음란물에 대한 규제책이나 불온통신물에 대한 규제책 또한 이에 속한다. III영역은 II영역과 달리 완결된 내용을 특정한 관점과 틀로 재단하여 규제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대상 내용이 주로 ‘불온통신’이나 ‘음란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나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누가(규제주체), 무엇(규제대상)을, 왜(규제이유와 근거), 어떻게(규제형성 과정) 그것을 만드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어진 규제와 법적강제에 따른 규제가 갖는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법적규제는 사회공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특정집단의 이해를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의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용자 개인인지에 따라 법적인 효력과 영향력도 달리 나타난다. 사업자를 통한 간접적인 규제와 사용자 개인에 대한 직접규제가 동시에 병행될 수도 있다. 사용자 개인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를 통한 간접규제 방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규제하는 것인지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규제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

IV영역은 사용자들의 협약을 통해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 영역은 공적인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규제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자율적 규제의 영역이다. 정보의 발신주체들은 공적영역에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펼쳐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스페이스에 공적영역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공적영역에서 통제와 간섭이 이루어질 경우 사이버스페이스의 형성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새로운 공적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없이 만들어질 수 없다.

V.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구조와 방식

앞서 제III절에서는 네티즌의 규범과 국가의 법적규제가 어떻게 대립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제IV절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네티즌의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유형을 통해 각 영역별로 규제유형이 갖는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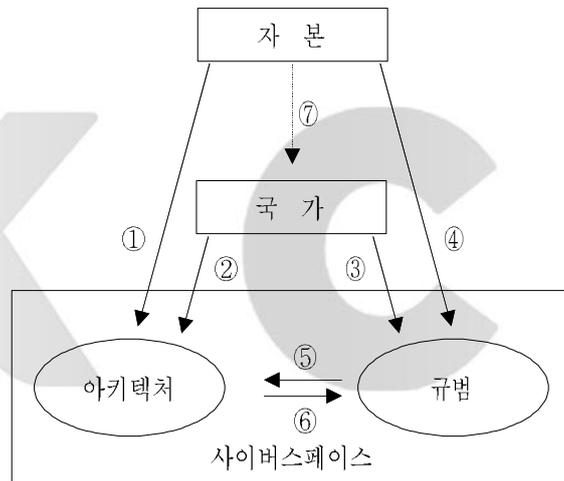
레식(Lessig, 1998, p.89)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① 규범norms을 통한 통제, ② 법률law을 통한 통제, 그리고 ③ 소프트웨어의 구조architecture를 활용한 통제, ④ 시장market을 통한 정보통제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러한 네 가지 규제방식은 서로 결합되거나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규제관련 법률은 사용자들의 관습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이버스페이스 전체의 아키텍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주도의 규제는 법률을 출발점으로 그 규제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레식처럼 규제를 규범, 법률, 소프트웨어, 시장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통제가 이루어지는 근거에 관한 부분과 통제의 구체적 방식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가 있다. 통제가 이루어지는 근거에 따라 국가주도의 타율적인 규제와 시민사회 주도의 자율규제로 나누는 것이 논의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레식의 분류처럼 기술에 의한 통제와 시장을 통한 통제로 갈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규제주체를 국가와 넷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이버스페이스 내부 구성원간의 합의와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규제(⑤, ⑥)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이 코드를 사용한 등급제이건 혹은 특정내용에 관한 필터링이건 관계없이 이런 경우 규제주체와 대상이 큰 틀에서 일치하거나 규제대상이 규제주체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면 규제에 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규제(①, ②, ③, ④)에서는 규제주체와 대상이 다르다. 이런 경우를 타율적 규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코드와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통해 규제(①, ②)될 수도 있고 네티즌의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③, ④)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기구는 법률을 통하여 이러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그림 2>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의 위상



자본도 마찬가지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인 구조와 규범에 개입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자본은 법률을 통해 국가기구를 대행자로 내세워 규제를 가할 수(⑦)도 있고 직접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처나 규범에 개입할 수(①, ④)도 있다. '선물경제'와 같은 규범을 조장했다가 급격하게 유료화를 통한 상업적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고, 느슨한 저작권을 퍼뜨리다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선회할 수도 있다. 자본은 시장과 상품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소비규범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킨다(④). 이와 더불어 관련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들은 실제표준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①). 이런 개입과 규제가 법률적인 형식을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의 자유로운 발전 속에서 전개될 수도 있으며 양자가 결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앞서 제II절에서 초기 인터넷의 기술적인 아키텍처와 네티즌들의 규범과 관행이 국가와 자본의 개입과 규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넷 사용자들의 규범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네티즌의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제와 대책 없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감행할 경우 네티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형(<그림 2>)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법률을 통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규제를 가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통신품위법』이나 그 밖의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율을 잡으려 할 때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만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반해 법률적 강제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코드를 사용한 규제⁶⁾는 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주도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아키텍처를 새롭게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정부행정 기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 제42조는 정보통신부의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 차단용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적규제가 아키텍처와 코드를 통한 규제와 결합되어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레식의 규제모형에서 법적규제와 아키텍처규제의 통합방식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네티 사용자의 합의와 규범을 통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규제와는 달리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를 강제한다는 문제가 있고 코드를 활용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기술적 강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와 아키텍처 통합형 규제가 내용등급제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표식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특정한 등급기준의 내용물을 걸러내어 사용자가 특정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등급제는 네가티브 검색엔진의 역할을 한다. 픽스(PICS)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을 선별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그것 자체는 콘텐츠에 관한 메타정보를 활용하여 웹페이지의 내용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는 표기기술에 지나지 않는다.⁸⁾ 이러한 네가티브 검색 시스템

6) 기술적인 규제는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Lessig, 1999).

7)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일부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58호]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상·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8) 픽스는 내용물의 성분을 표시하는 언어로서 검색 소프트웨어나 차단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자동적으로 등급 처리된 내용물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픽스는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검색엔진과는 반

의 경우 문제는 누가 등급을 정하고 어느 정도의 등급에서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사용자 개인이 스스로 내용물 제한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기구나 단체가 이를 타율적으로 규제할 경우 픽스기반 등급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보통 기계나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기술 자체에는 가치지향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은 순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달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엔진은 선택과 배열을 통하여 내용물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Lucas, 1998).

검색엔진의 용도와 기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검색엔진에는 정치적 의도와 상업적인 고려가 깊게 담겨 있다. 검색엔진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아주지 않는다. 야후Yahoo처럼 사업자가 카테고리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선별과 거름작용이 반드시 개입한다.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쓰지 않고 스스로 찾아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료와 정보를 검색 없이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 자체가 검열과 통제로 활용될 수 있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 뒤에는 선택과 배열을 통한 통제와 조작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자동화된 코드를 통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선택과 차단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구성원의 알 권리를 특정집단의 이해에 따라 왜곡하거나 제한할 위험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네트 사용자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약을 이루어야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현실세계에 대한 규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갖는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각 영역별로 네티즌의 규범과 국가의 법률적 규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세하고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규제방식에서는 법률적인 규제와 기술적 규제의 결합물인 내용등급제를 사례로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협약을 거치지 않은 기술적인 규제가 왜 위협적인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의 유형과 위상을 검토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법률적 개입 이전에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하였다. 앞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에 관한 연구는 법적인 차원과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세부적인 분석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대로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장소의 컴퓨터나 피씨방 컴퓨터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기준으로 특정 사이트 차단이 설정되어 있다. 픽스기반의 인터넷 내용시스템에는 RSACi와 ESRB, SafeSurf와 Medcertain, ICRA,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SafeNet 등이 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트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인터넷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생각과 표현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의 규범과 질서는 자율과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네트 사용자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법적·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와 이에 관한 법률제정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에 근거한 규제만이 실제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K C I

참 고 문 헌

- 방석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호(1997년 가을), 1997, pp.57-87.
- 백옥인,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 『경제와 사회』 제27 호, 1995.
- _____, 「정보사회와 전지구화 :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위하여」, 『비평』, 통권 제9호(2002 겨울호), 2002.
- 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정보통신 정책 자료집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진정한 출발선에 서기 위해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민관 공동규제 구축』 2002.
- 홍성욱, 『네트워크혁명, 그 열림과 닫힘』, 들녘 2002.
- Barabasi, Albert-Laszlo,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링크, 김기훈 역, 동아시야, 2002.
- Barbrook, Richard, "Cyber-Communism : How the Americans are Superseding Capitalism in Cyberspace," *Science as Culture*, Vol.9, No.1, 2000.
- Hauben, Michael, *Netizens : On the History and Impact of Usenet and the Internet* IEEE, Computer Society Press, 1997.
- Kapor, Mitchell, "Where Is the Digital Highway Really Heading? -The Case for a Jeffersonian Information Policy," *Wired* 1(3), Jul/Aug, 1993.
- Lessig, Lawrence, *Code*, New York : Basic Books, 1999.
- Lucas, Introna, "Shaping the Web : Why the Politics of Search Engines Matters," *The Information Society*, Vol.16, No.3, 1998.
- Lyon and Zureik,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Negroponte, N., *Being Digital* : knopf, 1995.
- Post, David, "What Larry Doesn't Get : Code, Law, and Liberty in Cyberspace," *Stanford Law Review*, Vol.52, 2000.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11 No.2 2002

The Regulation and Autonomy of the Cyberspace

Wook Inn Paik

This article seeks to disclose the problem of the government's regulation on the cyberspace. This paper will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regulation in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There is serious conflict between autonomous norm of netizen and compulsory law of state. The public sphere of cyberspace is based upon the activity of netizen. It is made by the contracts of the netizen and supported by them. This article will argue why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should be based upon the contract rather than compulsory regulation from outside. This study also suggests what type of regulation is suit with the cyberspace. From this point we could discuss what is to be done first before making regulatory law on the cyberspace.

key words : regulation, cyberspace, contract, , netizen.